

소재·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(제2조 관련)

| 한국표준산업분류 | 업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3       |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              |
| 17       |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|
| 20      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     |
| 21       |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|
| 22      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
| 23      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
| 24       |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
| 25      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      |
| 26       |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
| 27       |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|
| 28       |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
| 29      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|
| 30      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|
| 31       |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|
| 58       |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1.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
2.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